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54

발의연월일: 2021. 1. 26.

발 의 자 : 윤준병ㆍ기동민ㆍ김민철

김성환 · 김윤덕 · 노웅래

민형배 • 앙이원영 • 이수진(비)

이용빈 · 인재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 2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,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,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202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.2%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하였음.

이에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 등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이사"를 "조합원인 이사"로, "다음 각 호와 같고"를 "4년으로 하되"로, "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조합장(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은 2차에 한하여"를 "두 차례만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다섯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④ 설립 당시의 조합장,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5조의2제1항 본문 중 "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"를 "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48조제1항"을 "제48조제1항 및 제3항·제4항"으로 한다.

제161조 전단 중 "제48조제2항"을 "제48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조

후단 중 "제48조제2항"을 "제48조제5항"으로,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임원의 임기) ① 조합장과	제48조(임원의 임기) ①
<u>이사</u> 의 임기는 <u>다음 각 호와</u>	조합원인 이사4년으로
<u>같고</u> , <u>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</u>	<u>하되</u> - <u>두 차례만</u>
하며, 조합장(상임인 경우에만	<u><단서 삭제></u>
해당한다)은 2차에 한하여 연	
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설립 당시</u>	
의 조합장, 조합원인 이사 및	
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	
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	
1.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: 4	<u><</u> 삭 제>
<u>년</u>	
2.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	<u><</u> 삭 제>
<u>사: 2년</u>	
<u> <신 설></u>	② 제1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
	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다
	선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
	다.
<u> <신 설></u>	④ 설립 당시의 조합장, 조합원
	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
	관으로 정하되, 2년을 초과할
③ 레크리제 먼크 시시시 시크	수 없다.
② <u>제1항</u> 에 따른 임원의 임기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

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 항 단서를 준용한다.

제75조의2(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)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세8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 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조합장,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.

제161조(준용규정) 중앙회에 관하 저 여는 제15조제2항·제3항, 제17

<u>성</u>	
제48조제1항년	<u> 부터</u>
<u>제4항까지의 규정</u>	
2	
제48조제	 1항
<u>및 제3항·제4항</u>	
 네161조(준용규정)	•

조, 제18조, 제20조제2항·제3항, 제21조제4항·제5항, 제21조의3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제2항, 제25조, 제28조제1항(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)·제3항·제4항, 제29조제1항, 제30조(제1항제1 호의2는 제외한다),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6조, 제37조, 제 39조, 제40조, 제42조제3항 단 서·제4항·제5항, 제43조제5항, 제45조제9항·제10항, 제48조제2 항, 제49조(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항 제 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), 제49조의2, 제50조(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), 제50조 의2(제6항은 제외한다),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2조, 제53조, 제54조제1항·제2항제1 호·제4항, 제55조, 제57조제4항, 제62조, 제63조제1항·제3항·제4 항 전단, 제65조, 제67조제1항· 제3항·제4항, 제68조, 제69조, 제70조제1호, 제71조부터 제74 조까지,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,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

<u>제48조제5</u>
<u>항</u>

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 역농협"은 "중앙회"로. "조합 장"은 "회장"으로. "조합원"은 "회원"으로 보고, 제15조제3항 중 "제1항"은 "제121조제1항"으 로. 제17조제1항 중 "제15조제1 항"은 "제121조제1항"으로, 제2 0조제2항 및 제3항 중 "준조합 원"은 "준회원"으로, 제22조 전 단 중 "제21조"는 "제117조"로,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"감 사"는 "감사위원회"로, 제37조 제2항 중 "7일 전"은 "10일 전" 으로, 제39조제1항 단서 중 "제 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 지"는 "제123조제1호부터 제3 호까지"로, "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"은 "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 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 분의 2 이상의 찬성"으로, 제45 조제9항 중 "이사"는 "이사·사 업전담대표이사등"으로. "감사" 는 "감사위원"으로, 제48조제2

제48조제5

<u>항</u> 중 "<u>제1항</u>"은 "제126조제1 항---항"으로, 제50조제1항 중 "조 합"은 "중앙회"로, 제50조제10 항 중 "조합선거관리위원회"는 "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"로, 제5 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"조 합"은 "중앙회"로, 제5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중 "조합선거 관리위원회"는 "중앙회선거관 리위원회"로, 제52조제3항 중 "임원"은 "임원(회원조합장인 이사·감사위원은 제외한다)"으 로,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"조합장"은 "회장·사업전담대표 이사등"으로, "감사"는 "감사위 워"으로. 제54조제1항 전단 중 "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" 는 "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"로. 제54조제1항 후단 중 "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"은 "의결 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" 으로,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

<u>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</u>
<u> 규정</u>

은 조 제4항 중 "임원"은 각각 "임원(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 한다)"으로, 제57조제4항 중 "제1항제7호"는 "제134조제1항 제5호"로, 제63조제4항 전단 중 "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, 신용 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 업 부문 간"은 "일반회계와 특 별회계 간"으로, "조합"은 "중 앙회"로, 제65조제1항 중 "조합 장"은 "회장 또는 사업전담대 표이사등"으로, 제67조제3항 중 "제57조제1항제1호"는 "제134 조제1항제1호"로, 제68조제3항 제3호 중 "준조합원"은 "준회 원"으로.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"감사"는 "감사위원회"로,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상법」 제450조 중 "감사"는 "감사위원"으로, 제90조제2항제 1호 중 "제16조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"는 "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로 본다.